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1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이병진·소병훈·이원택

박상혁 • 이상식 • 권칠승

노종면 • 윤후덕 • 박 정

송옥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.

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 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(무자료 거래)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적용한다"를 "적용하며, 제7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)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용) ①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	
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	
해서만 <u>적용한다</u> .	<u>적용하며, 제7호는 2030</u>
	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
	대해서만 적용한다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중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
	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위
	하여 공급하는 것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